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850호, **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5년도 수입계획 변경

-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을 기금 수입으로 신규 편성(증 1,810백만원)하고,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증액(증 51백만원)하고자 함

※ 양성평등 가족 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'25년부터 매년 다둥이 행복카드 연단위 적립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성 예정

나. 2025년도 지출계획 변경

- 변경된 수입계획에 따라 예치금을 증액(1,745백만원)하고, 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 35백만원, 2025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5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함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

○ 수입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천원, %)

구분(항·목)	'25년(A) 당초 계획	'25년(B) 1차 변경	'25년(C) 2차 변경	증 감 (C-A)	(C-A)*100/A
합 계	2,088,024	2,088,024	3,949,226	1,861,202	89.1
216 이자수입	13,555	13,555	13,555	-	-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13,306	13,306	13,306	-	-
216-03 기타이자수입	249	249	249	-	-
223 보조금반환수입	30,259	30,259	30,259	-	-
223-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	30,259	30,259	30,259	-	-
224 기타수입	-	-	1,809,788	1,809,788	
224-07 그외수입	-	-	1,809,788	1,809,788	
714 예치금 회수	976,770	976,770	1,028,184	51,414	5.3
714-01 예치금회수	976,770	976,770	1,028,184	51,414	5.3
721 전입금	100,000	100,000	100,000	-	-
721-03 기타회계전입금	100,000	100,000	100,000	-	-
722 예탁금및예수금	967,440	967,440	967,440	-	-
722-04 예탁금이자수입	967,440	967,440	967,440	-	-

○ 지출계획 변경 내역

(단위 : 천원, %)

구분(정책·단위·세부사업)		'25년(A) 당초 계획	'25년(B) 1차 변경	'25년(C) 2차 변경	증 감 (C-A)	(C-A)*100/A
합 계		2,088,024	2,088,024	3,949,226	1,861,202	89.1
성평등 증진		1,117,000	1,148,000	1,233,000	116,000	10.4
	여성 권익증진 사업 (양성평등 가족 기금)	1,117,000	1,148,000	1,233,000	116,000	10.4
	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	677,000	658,000	658,000	△19,000	△2.8
	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	60,000	60,000	60,000	-	-
	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	100,000	100,000	100,000	-	-
	아동, 청소년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	50,000	50,000	50,000	-	-
	이동청소년 온라인 안심 지킴이 운영	50,000	50,000	50,000	-	-
	양육행복도시 성과평가	100,000	100,000	100,000	-	-
	아이사랑홈 인증 사업	80,000	80,000	80,000	-	-
	일본군 위안부 '기억의 터' 재개장	-	50,000	50,000	50,000	
	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	-	-	35,000	35,000	
	2025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	-	-	50,000	50,000	
일반예산(재무활동)		958,024	927,024	2,703,226	1,745,202	182.2
	보전지출(양성평등 가족 기금)	958,024	927,024	2,703,226	1,745,202	182.2
	여유자금예치	958,024	927,024	2,703,226	1,745,202	182.2
행정운영경비 (양성평등 가족 기금)		13,000	13,000	13,000	-	-
	기본경비(양성평등 가족 기금)	13,000	13,000	13,000	-	-
	기금관리비	13,000	13,000	13,000	-	-

Ⅲ. 검토의견¹⁾

-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**예치금 회수**가 5,100만원 증가하였고, **기타수입**으로 다동이 행복카드 적립금을 신규 편성(18억 900만원)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
 -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**예치금**을 17억 4,500만원 증액하고, **성평등증진**중 신규 세부사업에 8,500만원을²⁾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³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-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에 '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재원 및 기타수입을 예치하려는 것으로 당초 지출계획(9억 5,800만원)보다 182.2%, 17억 4,500만원이 증액되어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 - 그러나 또 다른 ②정책사업인 **성평등증진**은 세부사업에 대해 증·감하려는 것으로 당초 지출계획(11억 1,700만원)보다 10.4%, 1억 1,600만원 증액되어⁴⁾ 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1) ■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■ 증감률 등의 경우,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,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($\pm 0.1\%$ 범위내) 차이 있음

2) 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 3,500만원, 2025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5,000만원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4) 지출계획 변경(1차, '25. 2.28) :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 △1,900만원, 일본군 위안부 '기억의 터' 재개장 5,000만원 포함

〈표 3-1〉 양성평등 가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사업/단위사업/세부사업		당 초 (A)	1 변 차 경	기 금 운 용 계 변 경 안 (B)	증 감 (C = B - A)	증 감 륜 (D = C / A)
지 출 합 계		2,088,024	2,088,024	3,949,226	1,861,202	89.1
성 평 등 증 진	여성 권익 증진 사업 (양성평등가족기금)	1,117,000	1,148,000	1,233,000	116,000	10.4
	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 모 사 업	677,000	658,000	658,000	△19,000	△2.8
	양 성 평 등 주 간 사 기 념 행 사	60,000	60,000	60,000	-	-
	양성평등 문화 확산 을 위한 단체 지원	100,000	100,000	100,000	-	-
	아 동, 청 소 년 성 범 죄 및 성 폭 력 예 방 교 육 사 업	50,000	50,000	50,000	-	-
	아 동·청 소 년 온 라 인 안 심 지 키 미 운 영	50,000	50,000	50,000	-	-
	양 육 행 복 도 시 가 성 과 평 가	100,000	100,000	100,000	-	-
	아 이 사 랑 홈 인 증 사 업	80,000	80,000	80,000	-	-
	일 본 군 위 안 부 '기억의 터' 재개장	-	50,000	50,000	50,000	-
	피 해 자 안 심 응 원 프 로 그 램 운 영	-	-	35,000	35,000	-
	2025년 서울 시 성 평 등 임 금 공 시 추진	-	-	50,000	50,000	-
재 무 활 동		958,024	927,024	2,703,226	1,745,202	182.2
	보 전 지 출 (양성평등가족기금)	958,024	927,024	2,703,226	1,745,202	182.2
	여 유 자 금 예 치	958,024	927,024	2,703,226	1,745,202	182.2
행 정 운 영 경 비 (양성평등가족기금)		13,000	13,000	13,000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양성평등가족기금 지출계획
②양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5. 5.26) 재구성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**여유자금**과 신규 편성한 **기타수입**을 '25년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, 이와 연동하여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(적립)하며 다른 정책사업중 세부사업의 지출계획을 증·감하고자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⁵⁾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3조⁶⁾는 「지방자치법」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의 경우, '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' 정하고 있고,

-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⁷⁾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·심의하되 일반회계·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·중복 여부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,

○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'25년도 일반회계 사업인 **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**(9억 2,900만원) 및 **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**(16억 7,800만원)은 스토킹(데이트폭력 포함)범죄 등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, 법률지

5) 「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1조(기금의 용도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양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
2. 제45조에 따른 법인, 단체 또는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
3.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생략

6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3조(기금의 설치 제한)

① ~ ② 생략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.

7) 행정안전부, 「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4. 7), p.281

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

-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·심의하고, 일반회계·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·중복 여부 검토

※ 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, 기금의 적립기간 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
원, 이주비지원 등 원스톱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8),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기금으로 신규 지출계획하는 **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**(민간경상사업보조, 3,500만원) 또한 폭력·스토킹·데이트폭력·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률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될 것으로 사료되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- 아울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은 **민간경상사업보조** 등 기금에 보조금을 편성하는 경우,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9)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기금운용 계획을 제출하여 절차적 요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나10)
-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도 동 기금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성 해소를 조건으로 한 ‘조건부 적정’ 결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지출 계획중 **피해자 안심응원 프로그램 운영**(3,500만원)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○ 또한 「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조례로,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 사업은 구분되어야 함에도 동 조례에는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기금으로 지출하는 사업을 정하면서 기금의 용도중 “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”으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어11)

8) ■ 여성가족실, 2025년도 예산(안) 사업별설명서 pp. 240~250

■ 서울특별시, 2025년도 예산서, p. 226

9) 행정안전부, 「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’24. 7), p.330

<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>

○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「지방보조금법」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을 준용하여 관리 철저

-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, 사업수행상황 점검, 실적 보고 및 정산, 운용평가,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

※ 예)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

- 기금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(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등 참조)

10) 서울특별시, 재정담당관-6321 (’25. 5.15)

- 기금으로 지출하려는 사업과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의 구분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업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¹²⁾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기금의 재원이 지출계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○ 아울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,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¹³⁾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

- 서울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·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때 기금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,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

-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,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사업별 설명서를 누락한다면 사

11) 「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1조(기금의 용도)

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 1. 양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
 2. 제45조에 따른 법인, 단체 또는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
 3.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1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3조(기금의 설치 제한)

- ① ~ ② 생략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.

13) 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생략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 - ① 생략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업에 대한 신설, 변경 등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의결을 요청하는 행태인 것은 물론 지출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,

-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, 변경된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